

의안번호	제391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
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발 의 자	김성대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3년 8월 29일

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

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(김성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9일

발 의 자 : 김성대, 이태훈, 최정훈
유상용, 박병천, 박용규
김종필, 안지윤

1. 주 문

- ‘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’는 세계 대학생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대회로 충청권 4개 시·도가 공동 유치함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35조에 따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- 동 위원회는 ‘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 시설 현장 점검,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.
-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12명이내로 하고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-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안이유

- 올림픽과 함께 2대 국제스포츠종합경기로 꼽히는 세계 대학생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- 세계적인 행사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 시설 및 대회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상황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함
- 대회 폐회 이후 체육 기반 시설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
-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4개 시·도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고, 더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29조, 제35조, 제38조, 제39조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제29조(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35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3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- 제39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)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.
-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.
-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.
-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.
-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